

장애학생 교육 및 대학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 2011. 3. 2.
개정 2012. 3. 1.
개정 2014. 6. 1.
개정 2016. 3. 1.
개정 2018. 3. 1.
개정 2020. 4. 13.
개정 2022. 2. 7.
개정 2023. 3. 6.
개정 2023. 5. 2.
개정 2025. 2. 17.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 29조, 제 30조, 제31조, 제32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라 장애학생의 교육 및 대학생활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학생의 범위) 장애학생은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등록증 소지자)된 장애학생 중 장애학생 지원부서에서 실시하는 장애학생 등록신청을 완료한 학생을 말한다.(우리대학 입학예정인 장애 학생을 포함함)

제 2장 학생관리 및 학습지원, 입학전형 지원

제3조(장애학생 신고) 장애학생은 입학 직후 또는 장애인등록증 발급 직후 장애학생 지원 부서에 장애 정도와 장애유형을 신고하여야 하며 재학 중 장애정도가 완화 또는 심화되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상자료 관리) ① 장애학생지원부서는 장애학생에 관한 신상자료 관리를 총괄한다.

② 장애학생지원부서는 관련 부서 간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매학기 장애학생 명부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공유하도록 한다.

제5조(기자재 확보 및 활용지원) 장애학생지원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애학생 학습활동에 필요한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를 확보·운영하고 정기적으로 활용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1. 장애학생 지원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애학생이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대해 텍스트, 이미지, 인쇄물 등의 다양한 형태의 학습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2. 장애학생 학습활동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학생처에서 장애학생에게 일정기간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장애학생 정보제공) ①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서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좌의 교강사에게 장애 학생의 장애유형, 장애 정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장애학생 교수·학습 권고 안내문 발송)

② 장애학생에 관한 정보를 교강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강사는 정보보호 의무를 숙지해야 한다.

제7조(수강신청) 장애학생이 소속된 스쿨은 중증장애, 거동불편, 지적수준 평균이하 등을 이유로 장애 학생이 대리수강신청을 희망할 경우 개별상담을 통해서 대리수강신청 지원 요청서를 제출받아 수강 신청 전 대리수강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스쿨은 장애학생이 수강 희망하는 과목의 정원 및 강의실(실습실) 상황에 따라 수강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학점등록제) ① 학칙 제70조(장애학생 학점등록)에 따라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학점등록제를 신청하여 선정된 학생은 학칙 제66조(등록금)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제9조(장학금 지급) 장애학생에게는 장애 및 가계곤란 정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장애학생 도우미) 장애학생에게는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도우미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학생 도우미 모집, 선발, 교육, 배치
2. 도우미 학생 상담 및 활동 안내 및 자료 제공
3. 도우미 학생 평가 및 활동비 지급 (세부사항 장학금 관련 규정에 따름)

제10조의 2 (장애학생 입학전형 편의제공) 장애인 수험생이 입학전형 전 과정에서 장애로 인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대학생활 지원

제11조(장애이해 프로그램) 장애학생 지원부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예방과 비 장애 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특강, 장애체험 등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동아리 활동 및 단체활동지원) 장애학생 지원부서는 장애학생의 동아리 활동 및 단체 활동을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차량, 시설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3조(편의시설 확충) 관리센터는 연차별 장애학생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필요시 확충 계획을 수립한다.

제14조(기숙사 이용) 장애학생이 기숙사 이용을 희망할 경우 기숙사 운영규정에 따라 배정한다.

제15조(상담 등) 장애학생의 원활한 대학생활과 진로 및 취업을 위해서 다음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학생의 원활한 대학생활을 위한 상담 (학생상담센터와 연계)

대학생활 가운데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해서 전문 상담 직원과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차별없이 즐겁고 원활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장애학생 진로·취업상담 및 추후지도

정기적 상담을 통해서 장애학생의 진로에 대한 고민 해결 등에 도움을 주도록 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학생을 위해서 취업상담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교내외 취업프로그램 및 장애인 고용 박람회 등의 행사에 장애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취업알선을 최대한 돕는다.

제16조(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장애학생의 교육 및 대학생활에 관한 지원의 기본 방침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과 운영은 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단, 장애학생 9인 이하의 경우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설치하지 않아도 됨.)

제17조(장애학생 지원 부서)

- ① 장애학생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담당 부서를 장애학생지원부서로 하며 담당 직원을 둔다.
- ②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은 다음의 일을 수행한다.
 1. 장애학생 상담
 2. 도우미 지원제도의 운영
 3. 장애학생 이동지원
 4. 장애학생 편의시설의 제공 및 개선
 5. 장애인식개선 교육 지원
 6. 기타 장애학생 지원 개선 업무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